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1,056,393	15,331,692
일반회계	473,379,825	14,201,395
특별회계	37,676,568	1,130,297
기타특별회계	37,676,568	1,130,297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43,684	10,31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5,585	17,568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591,292	47,739
성진강댐특별회계	10,063,485	301,905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5,728,703	171,8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359,519	550,78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4,300	30,129

제 2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2,8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5 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217,147천원」 과 같다

제 6 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와 같다

제 7 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한다